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호 활동의 법적 한계 명문화〉

■ 광상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66호)

2025. 7.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곽상언 · 강경숙 · 서미화 · 한창민 · 김재원 · 김종민

김준형 · 김원이 · 박용갑 · 허성무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5. 6. 30.

3. 회 부 일 : 2025. 7. 1.

※ 의안번호 : 1116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 · 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호원의 직무 행사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 · 순찰 및 방비하는 등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경호 업무 수행 시 경호원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상 ‘경호’의 정의에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의 문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2. ~ 4. (생략)	제2조(정의) ----- -----. 1. ----- ----- ----- ----- 등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 -----. 2. ~ 4.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이를 저지하여 집행이 무산된 사건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경호처가 국가 시스템을 방어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 개인을 방어하는 ‘사병(私兵)’으로 전락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비판 등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음.¹⁾

1) 이투데이, “박근혜 “경호처, 尹 대통령 개인의 사병 아냐…공무원 조직인 걸 명심해야””, 2025. 1. 3.
헤럴드경제, “공권력 사망의 날” 탄식한 역사 유튜버…“대통령 경호실, 개인 사병이어선 안돼”, 2025. 1. 3.
경향신문, “법 위의 윤석열과 체포 막은 경호처, 이게 내란이다”, 2025. 1. 3.

개정안은 위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호’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호권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경호 업무 영역에 법치주의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무원은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연히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²⁾를 부담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개정 규정이 실질적 구속력을 갖기 보다는 기존의 의무를 재확인하는 선언적·훈시적 규정에 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임.

따라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권한남용 방지라는 개정안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의규정 개정 뿐만 아니라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내부절차 마련, 외부 기관의 실질적인 감독 및 견제 시스템 강화, 위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 2)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선서)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이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법률 위반 또는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법률상 통제장치를 마련하려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건³⁾이 계류 중이므로, 향후 법안심사 시 이를 병합하여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6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의 대표발의 의원 및 의안번호는 아래와 같음.

- ①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제7313호), ②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제7320호), ③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제7341호),
④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제7394호), ⑤ 황 희의원 대표발의(제7489호), ⑥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제7543호),
⑦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제7554호), ⑧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제7633호), ⑨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제8674호),
⑩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제10379호)